

#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(안)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1996년 3월 8일

- 회부일자 : 1995년 3월 8일

다. 상정일자 : 제123회 임시회

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('96. 3. 13) 상정, 질의답변, 의결

#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건설도시국장 송 완 호 )

가. 제안이유

충청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를 대통령령 제14744호 ('95. 8. 4)로 공포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에 의거 심의대상 공사금액을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하고, 심의위원회 위원수를 증원하여 현행 제도의 기능을 일부 개선, 보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심의위원회 위원수를 80인 이내 → 120인 이내로 개정

-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 → 건설교통국장으로 개정

-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설계심의 대상금액 3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공사를 → 30억원이상인 건설공사로 개정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의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지방위원회 구성원을 증원하고, 심의대상 금액을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하며 직제 개편에 따라 부위원장의 명칭을 변경하는 개정조례인바,

- 심의위원회 위원수를 80인이내에서 120인 이내로 하고
-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에서 건설교통국장으로 하며
-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설계심의 대상금액을 30억원이상 200억원 미만 공사의 상한금액을 삭제하여 3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답변 요지 : 없 음

5. 토 론 요 지 : 없 음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 (참석위원 7인 만장일치)

7. 소수의견 요지 : 없 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### 9. 첨부서류

-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증개정조례안
- 신규조문 대비표